

제2946호
2022. 8.1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
 편집인: 홍보전산과장도순심
 전화: 3396-4951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◎ 자치법규

[규 칙]

제75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2
 제75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
 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
 ○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 치 법 규

[규 칙]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6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제2항 본문 중 “서면”을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”으로 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

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 : 3만원
2. 경조사비 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
3. 선물 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“농수산가공품”이라 한다)은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한다.

비고

-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라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) ① ~ ⑥ (생 략)	<u><삭 제></u>
제8조 (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 ① ~ ③ (생 략)	<u><삭 제></u>
제9조 (직무 관련 영리 행위등 금지) ① ~ ② (생 략)	<u><삭 제></u>
제10조(가족 채용 제한) ① ~ ③ (생 략)	<u><삭 제></u>
제11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 ① ~ ③ (생 략)	<u><삭 제></u>
제12조(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) ① ~ ② (생 략)	<u><삭 제></u>
제21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 공무원은 청사·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	<u><삭 제></u>
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	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<p>및 신고)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및 신고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5조(직무관련자 거래 신고) ① ~ ⑥ (생략)</p>	<p><삭 제></p>
<p>[별표 1] 음식물, 경조사, 선물 등의 가액범위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 3. 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“농수산가공품”이라 한다)은 10만원으로 한다.</p>	<p>[별표 1] 음식물, 경조사, 선물 등의 가액범위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-----.</p>

<p>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<u>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u></p>	<p>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<u>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u></p>
<p>다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p>	<p>다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</p>

[별지 제3호 서식]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4호 서식]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5호 서식] 의견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6호 서식]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7호 서식]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·조치 내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8호 서식]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9호 서식]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15호 서식]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	<u><삭 제></u>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(인)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7호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동정부과) 동정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7.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
- 18. 시민친화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12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삭제한다.

제3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행정지원과)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5. 평정(경력·근무성적)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1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동정부과) 동정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7. 시민친화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18. <신 설></p>	<p>제6조(동정부과) 동정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7.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18. (<u>현행 제17호와 같음</u>)</p>
<p>제12조(교육아동청소년과)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4. 평생교육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15.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16.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17.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	<p>제12조(교육아동청소년과)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4. <삭 제></p> <p>15. <삭 제></p> <p>16. <삭 제></p> <p>17. <삭 제></p>
<p>제32조(행정지원과)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5. <신 설></p>	<p>제32조(행정지원과)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5. 평정(경력·근무성적)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</p>
<p>제33조(기획조정과)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5. 평정(경력·근무성적)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제33조(기획조정과)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5. <삭 제></p>